칸서스 Golden PIG 채권혼합투자신탁1호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칸서스 Golden PIG 채권혼합투자신탁 1호"**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칸서스 Golden PIG 채권혼합투자신탁 1호"**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투 자 신 탁 명 : 칸서스 Golden PIG 채권혼합투자신탁 1호

2. 자산운용회사명 : 칸서스자산운용㈜ (http://www.consus.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굿모닝신한타워9층, TEL : 02-2077-5000)

3. 판 매 회 사 명 : 동부증권 (http://www.winnet.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5, TEL: 02-369-3000)
HMC투자증권(http://www.shs.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3 TEL: 02-3787-2114)
한양증권(http://www.shs.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1 TEL: 02-3770-5000)
칸서스자산운용(http://www.consus.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TEL : 02-2077-5000)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보전하지 아니합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08. 12. 22.

5. 투자설명서 비치·공시장소 및 인터넷 게시주소 : 판매회사 영업점, 자산운용회사 홈페이지 및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http://www.amak.or.kr)

금융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SUS
ASSET MANAGEMENT

핵심설명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Ⅰ 투자신탁의 개요 (☞본문 5쪽)

1. **명 칭** : 칸서스 Golden PIG 채권혼합투자신탁 1호
2. **신탁계약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
3. **종 류** : 채권혼합형, 국내상품, 공모형, 추가형, 개방형, 증권투자신탁, 종류형투자신탁
4. **자산운용회사** : 칸서스자산운용㈜

Ⅱ 투자정보 (☞본문 6쪽)

구분	주요내용
1. 투자목적	대안투자기반에서 구축된 운용전략 포트폴리오로 주식과 채권시장의 등락에 관계없이 국공채수익률+α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절대수익을 추구
2. 주요 투자전략	-신탁재산의 85%수준을 국공채에 투자하고 이에 따른 증거금 15%를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 투자 -매월분배금 지급을 위해 신탁재산의 15%수준을 콜론 및 기타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
3. 주요 투자위험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이자율, 채권가격, 주식시장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 할 수 있음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5등급 중 3등급의 보통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님** -국공채수익률+α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절대수익을 하는 장기투자자

5.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공동운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유승우	46세	본부장	11개	14,618억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주식운용(대신투신 등 14년 11개월)

6. 투자실적 추이 :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도	최근1년 (07.12.22~08.12.22)	최근2년 (. .~ . .)	최근3년 (. .~ . .)	최근5년 (. .~ . .)	설정일 이후 (07.05.30~08.12.22)
클래스 C3	**4.37%**				**6.05%**
비교지수	**7.91%**				**10.40%**

* 당해 투자신탁은 절대수익추구형펀드로서 매경BP국공채1년지수를 비교지수로 사용합니다.

Ⅲ 매입 · 환매관련 정보(☞본문 12쪽)

1. 수수료 및 보수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종 류			C1 클래스	C2 클래스	C3 클래스	C4클래스	A1 클래스
수익증권판매기준			적립식투자자	임의식 ·거치식투자자	최초납입금액 100만원이상의 임의식·거치식투자자	자산운용회사를 판매회사로 하는 투자자	임의식 ·거치식투자자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납입금액의 0.5%
	환매수수료		**모든 클래스에 대하여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보수	판매회사보수	연 0.85%	연 0.80%	연 0.79%	없음	연 0.30%
		운용회사보수	모든 클래스에 대하여 연 0.35%				
		기타보수	연 0.05%				
		보수합계	**연 1.25%**	**연 1.20%**	**연 1.19%**	**연 0.40%**	**연 0.70%**
	기타비용		-	-	-	-	-
	총보수·비용비율		**연 1.25%**	**연 1. 20%**	**연 1.19%**	**연 0.40%**	**연 0.70%**

주 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해당기간 이전 환매 시 일회적으로 부과

2)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냄

2. 과세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 (2008. 12. 22.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3. 매입 · 환매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오전9시~ 오후 5시) 중에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구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경과 후
매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D → D+1 자금납입(5시이전) → 수익증권 매입(D+1 기준가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D → D+1 → D+2 자금납입(5시경과 후) → 수익증권 매입(D+2 기준가격적용)
환매	-환매청구일(D)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 D → D+1 → D+2 → D+3 환매청구(5시이전) → 기준가격 적용 → 환매대금 지급	-환매청구일(D)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5영업일(D+4)**에 환매대금을 지급 D → D+2 → D+3 → D+4 환매청구(5시경과 후) → 기준가격 적용 → 환매대금 지급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1588-42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판매회사홈페이지주소)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_____(점포명) _____(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 _____(은)는 (고객성명) _____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 . .

판매직원/취득권유인 _____서명 또는 (인)

목차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 5

Ⅰ. 투자신탁의 개요
Ⅱ. 투자정보
Ⅲ. 수수료·보수·과세
Ⅳ. 매입·환매·전환·분배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 16

Ⅰ.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Ⅱ. 자산의 평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Ⅲ. 투자증권·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Ⅳ. 매입·환매·전환·분배관련 유의사항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 22

Ⅰ. 자산운용회사
Ⅱ. 판매회사
Ⅲ. 수탁회사
Ⅳ. 일반사무관리회사
Ⅴ. 채권평가회사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28

Ⅰ. 수익자의 권리
Ⅱ. 공시

별지 :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 34

제 1 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Ⅰ. 투자신탁의 개요

1. 투자신탁의 명칭 : 칸서스 Golden PIG 채권혼합투자신탁 1호

2. 신탁계약기간 :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3. 투자신탁의 종류 : 증권투자신탁, 종류형투자신탁, 채권혼합형, 국내상품, 공모형, 추가형, 개방형

▫ 당해 투자신탁의 구조 : 종류형투자신탁

클래스 구성	C1 클래스	C2 클래스	C3 클래스	C4 클래스	A1 클래스
고객구분	적립식투자자	임의식 ·거치식투자자	최초 납입금액 100 만원 이상 임의식·거치식투자자	판매회사를 자산운용회사로 하는 투자자	임의식 ·거치식투자자
환매수수료	1. 30 일미만 : 이익금의 70% 2. 90 일미만 : 이익금의 30%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납입금액의 0.5%
신탁보수	연 1.25%	연 1.20%	연 1.19%	연 0.40%	연 0.70%
분배금 지급	매월 지급하지 않음	투자원금의 0.5%(세후)를 매월 지급	매월 지급하지 않음	매월 지급하지 않음	매월 지급하지 않음

4. 자산운용회사명 : 칸서스자산운용㈜ (http://www.consus.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굿모닝신한타워9층, TEL: 02-2077-5000)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 : 2007.5.30
▫ 투자신탁의 명칭변경일 : 해당사항 없음

6. 수탁고 추이 (단위 : 억원)

연도	현재 (2008.12.22)	6개월전 (2008.6.22)	1년전 (2007.12.22)	1년6개월전 (2007.6.22)	2년전 (2006.12.22)	2년6개월전 (2006.6.22)	3년전 (2005.12.22)
펀드 전체	**6.63**	**42.27**	**132.21**	**61.76**	**114.15**		
증가율	**-84.32%**	**-68.03%**	**114.07%**	**-45.90%**			

7. 해지사유
▫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3.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Ⅱ. 투자정보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대안투자기반에서 구축된 운용전략 포트폴리오로 주식과 채권시장의 등락과 관계없이 국공채수익률 + α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절대수익추구를 펀드의 주된 투자목적으로 하는 채권혼합형 투자신탁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혼합형펀드로서 채권, 어음,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하되, 일부는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투자를 통한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은 대안투자기반에서 구축된 운용전략 포트폴리오로 주식과 채권시장의 등락과 관계없이 국공채수익률+ α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절대수익을 추구하여 투자자에게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투자대상	▫ 채권 : 95% 이하 ▫ 주식 : 10% 이하 ▫ 어음 : 95% 이하 ▫ 채권·주식·어음 : 40% 이상 ▫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15% 이하 ※ 자세한 사항은 신탁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투자전략

▫ 펀드의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펀드 자산을 주로 채권 및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합니다. 다만, 주식에의 투자는 무위험차익거래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벤치마크 : 매경BP국공채1년지수

1) 이자소득 추구전략

□ 채권 투자전략

▫ 국채, 지방채,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 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과 신용등급 A2(-) 이상의 어음에 주로 투자합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95% 이내(평균적으로 85%수준)에서 채권을 투자하며, 듀레이션을 1년 이내로 유지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 투자채권의 일정부분을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투자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대용증권으로 활용합니다.

□ 유동성자산 투자전략

▫ 매월 분배금 지급에 따른 유동성 관리차원에서 콜론 및 기타 현금성자산에 투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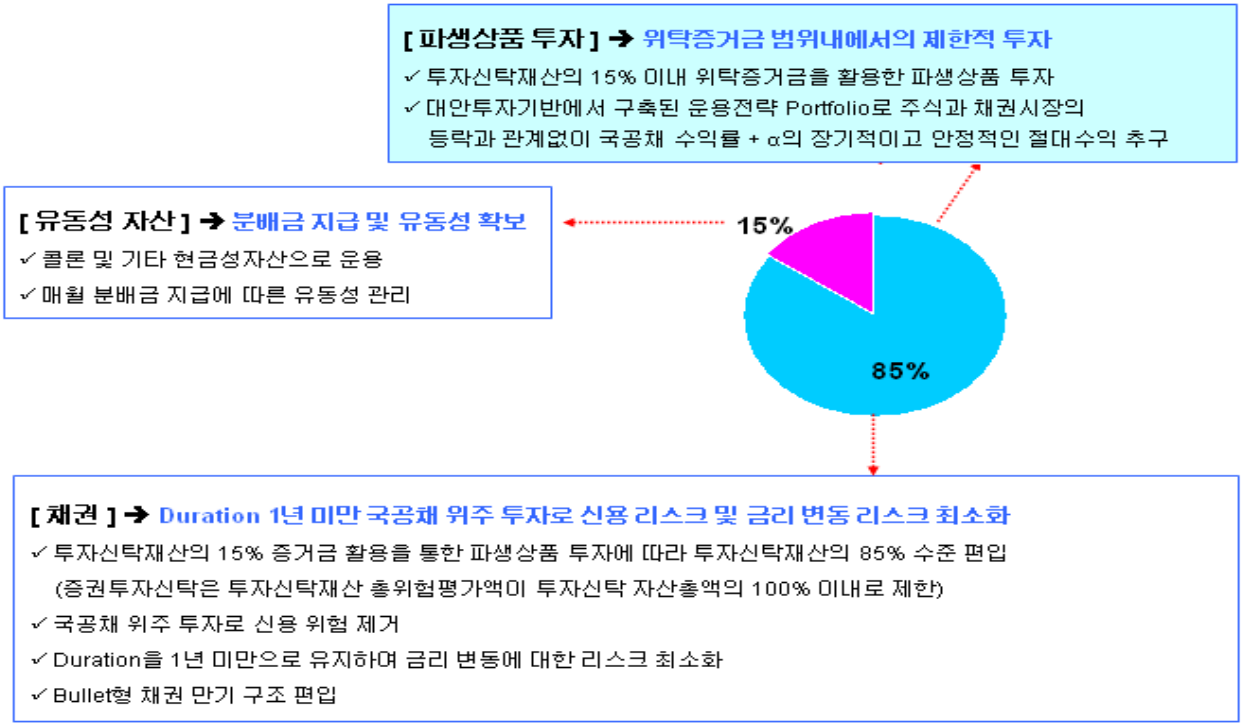

2) 자본이득 추구전략

□ 파생상품 투자전략

▫ 위탁증거금 범위내에서의 제한적 투자

▫ 투자신탁재산의 15% 이내의 위탁증거금을 활용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합니다.

▫ 핵심투자전략 1: 시분할을 통한 안정적 수익 확보

1개월 이하의 듀레이션을 가진 운용전략을 적용하여 절대적 주가변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환경하에서 운용

▫ 핵심투자전략 2: 전략적 분산을 통한 추가 수익 확보

1개월간 주가 10% 이하의 등락 확률 70% ➔

10% 이내의 주가변동시 수익확보전략 & 추세하락시 수익확보전략 + 추세상승시 수익확보전략

□ 주식투자전략

▫ 주식과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간의 무위험 수익 추구를 위한 차익거래 위주로 투자합니다.

▫ 이 경우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재산의 10% 이내에서 무위험 차익거래 위주로 운용합니다.

※ 유의사항

(1) 당해 펀드의 운용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당해 펀드가 추구하는 목표 및 스타일은 단기적인 투자자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자에게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주요 투자위험

구 분	주 요 내 용
투자위험 요약	당해 투자신탁은 주로 채권에 투자합니다. 만약, 투자된 채권을 발행하는 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에 따라 급격히 채권가격이 변동되거나, 어음 등의 투자에서 발행사의 파산 등의 원인이 생길 경우 손실위험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관련법령은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여 이와 같이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수익증권이 판매되는 경우에도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

	리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채권 및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수익자는 이자율, 개별종목채권가격 및 주식시장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수익자의 투자자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투자된 종목의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변동위험· 이중가격 위험	시장의 여러 변동요인에 따라 환매청구시의 기준가격과 환매일의 기준가격이 동일하지 않아 환매청구일의 평가금액은 환매일의 출금액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채권혼합형투자신탁의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금액이 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분배에 따른 세금관련위험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채권혼합형펀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금의 이연효과가 없어 복리운용의 효과면에서 다소 불리합니다.
환매연기 위험 또는 환매제한위험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유가증권시장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증권 등 자산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환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에 따른 원본감소 위험	분배금 지급시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에 따라 투자원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익금이 분배금보다 적을 경우 분배금 지급재원이 투자원금에서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분배금 지급중단위험	매월 분배금 지급에 따라 수익증권보유좌수 및 평가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며, 매월 당해 수익자의 분배금이 매월 당해 수익자의 분배직전 세후수익증권평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배금이 최종 분배금이 되며, 다음 분배금부터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1) 투자위험 등급

▫ 칸서스자산운용은 동일한 조건(기간, 변동성)하에서 VaR(Value at Risk 이하 “위험도”)를 계산하여 위험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위험등급을 5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투자위험 등급 기준]

등급	위험	기대수익	유형
1등급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주식형
2등급	높음	높음	주식편입 60%이하 채권혼합형
3등급	**중간**	**중간**	**주식편입 30%이하, ELS투자형**
4등급	낮음	낮음	채권형, 원금보존추구형
5등급	매우 낮음	매우 낮음	MMF

2) 당해 투자신탁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대안투자기반에서 구축된 운용전략 포트폴리오로 주식과 채권시장의 등락과 관계없이 국공채수익률 + α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채권혼합투자신탁으로 신탁재산을 주로 채권 및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보통의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국공채수익률 대비 높은 수익을 기대하므로 투자위험등급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보통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이 펀드는 국공채수익률 + α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절대수익을 기대하며 보통 수준의 손실위험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개인, 법인에게 알맞은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수익률 + α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절대수익을 추구하고 보통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펀드에 부과되는 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에 따라 적합한 수익증권(클래스)에 투자하도록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금액, 투자기간, 분배금지급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매회사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주요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당해 투자신탁은 법 제138조에 의거하여 판매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수수료 등 종류별로 부과되는 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공시시기	자산운용회사는 통보 받은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매일 게시하여야 합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기준가격의 공시는 칸서스자산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http://www.consus.co.kr)에 공고하거나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에 게시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주)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수익자가 수익증권 매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이 아닌 전체 펀드의 기준가격)을 계산할 경우 각 클래스의 순자산총액 합을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좌수(각 클래스의 설정·해지금 합계액을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으로 계산한 좌수의 합, 즉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으로 계산한 좌수를 가감)로 나누어 산출됩니다.

6.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유승우	46세	본부장	고려대 경제학과 / 대신투신 주식운용팀장 / 칸서스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 상기 운용전문인력이 현재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수와 운용자산 규모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Ⅰ. 자산운용회사" 중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 투자실적(기간수익률):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http://www.amak.or.kr) 전자공시 사이트에 게시된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기하평균)

연도	최근1년 ('07.12.22~'08.12.22)	최근2년 (06.12.22~08.12.22)	최근3년	설정일 이후 ('07.5.30~'08.12.22)
클래스 C3	**4.37%**	**-**	**-**	**6.05%**
비교지수*	**7.91%**	**-**	**-**	**10.40%**

* 비교지수 = 매경BP국공채1년지수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도	최근 1년차 ('07.12.22~'08.12.22)	최근 2년차 ('06.12.22~'07.12.22)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클래스 C3	**4.37%**	**-**	-	-	-
비교지수*	**7.91%**	**-**	-	-	-

* 비교지수 = 매경BP국공채1년지수

Ⅲ. 수수료 · 보수 ·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비 고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 판매수수료	A1 클래스 : 납입금액의 0.5%	매입시	
	후취 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시	
	환매수수료	모든(C1, C2, C3, C4, A1) 클래스에 대하여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합계	C1 클래스 : 환매수수료 C2 클래스 : 환매수수료 C3 클래스 : 환매수수료 C4 클래스 : 환매수수료 A1 클래스 : 환매수수료·선취판매수수료		

□ 선취판매수수료

①판매회사는 A1 클래스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합니다.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부과합니다.

1. A1 클래스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합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C1 클래스 수익증권, C2 클래스 수익증권, C3 클래스 수익증권 및 C4클래스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 환매수수료

①모든 클래스 (C1, C2, C3, C4, A1) 수익증권은 환매수수료를 징구하며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약관제21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를 말합니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합니다.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③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④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관 제2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된 C2 클래스 수익증권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C1 클래스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비 고
투자신탁에 부과 되는 보수 및 비용	자산운용회사 보수	모든(C1, C2, C3, C4, A1) 클래스에 대하여 : 연 3.5/1,000	매 1개월	
	판매회사 보수	C1 클래스 : 연 8.5/1,000 C2 클래스 : 연 8.0/1,000 C3 클래스 : 연 7.9/1,000 C4 클래스 : 없음 A1 클래스 : 연 3.0/1,000	매 1개월	
	수탁회사 보수	모든(C1, C2,C3, C4, A1) 클래스에 대하여 :연 0.34/1,000	매 1개월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모든(C1, C2, C3, C4, A1) 클래스에 대하여 :연 0.16/1,000	매 1개월	
	기타 비용		비용발생시	과거 결산수치
	총 보수·비용비율	C1 클래스 : 연 12.5/1,000 C2 클래스 : 연 12.0/1,000 C3 클래스 : 연 11.9/1,000 C4 클래스 : 연 4.0/1,000 A1 클래스 : 연 7.0/1,000		

□ 투자신탁보수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자산운용회사가 취득하는 자산운용회사보수와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수탁회사가 취득하는 수탁회사보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합니다.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매 1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3.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1. 자산운용회사 보수율 : 연 1,000분의 3.50
2. 수탁회사 보수율 : 연 1,000분의 0.34
3.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 연 1,000분의 0.16
4. 판매회사 보수율 : 클래스(종류 수익증권)별로 판매회사보수율이 다름

□ 판매회사보수

C1 클래스 수익증권	C2 클래스 수익증권	C3 클래스 수익증권	C4 클래스 수익증권	A1 클래스 수익증권
연 8.5/1,000	연 8.0/1,000	연 7.9/1,000	연 4.0/1,000	연 3.0/1,000

□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 원)

투자기간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C1 클래스	125,000	375,000	625,000	1,250,000
C2 클래스	120,000	360,000	600,000	1,200,000
C3 클래스	119,000	357,000	595,000	1,190,000
C4 클래스	40,000	120,000	200,000	400,000
A1 클래스	70,000	210,000	350,000	700,000

* 주1) 약관 제20조 수익증권 판매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하였으며, 투자금액은 1천만원 기준임
주2) 위 예시내용은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며, 연간 투자수익률(0% 가정) 및 투자기간 중 환매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 관리비용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합니다.

②제1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투자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투자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투자증권 등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시 환급 받게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신탁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수익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6.2.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장주식, 벤처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에서 발생되는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세관련법령 등의 개정 및 유권해석 등에 따라 수익자의 세금 등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Ⅳ. 매입 · 환매 · 전환 · 분배

1. 수익증권의 매입

□ 수익증권의 매입방법 : 판매회사의 영업점 창구에서 매입청약 하셔야 합니다.

□ 수익증권의 판매기준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합니다.

1. C1 클래스 수익증권 : 적립식 투자자
2. C2 클래스 수익증권 : 임의식·거치식 투자자
3. C3 클래스 수익증권 : 최초 납입금액 100만원이상의 임의식·거치식 투자자
4. C4 클래스 수익증권 : 자산운용회사를 판매회사로 하는 투자자
5. A1 클래스 수익증권 : 임의식·거치식 투자자

㈜ 적립식 투자자가 일부 환매시 판매회사가 이를 임의식 투자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C1 클래스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의 판매가격

▫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약관 제19조제3항을 준용합니다)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약관 제3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수익증권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Ⅳ. 매입・환매・전환・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수익증권의 전환

▫ C1 클래스 수익자는 약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정한 저축기간의 종료 이후에 C1 수익증권에 대하여 C2 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의 전환에 있어 C1 클래스 수익증권의 수익자는 C1 클래스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그 환매자금(환매대금에서 관련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매대금지급일의 C2클래스 수익증권 기준가격으로 C2 클래스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C2 클래스, C3 클래스, C4 클래스 및 A1 클래스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수익증권 전환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Ⅳ. 매입・환매・전환・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3. 전환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증권의 환매	①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④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⑤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은 지체없이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⑥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자산운용회사에 수익

	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판매회사는 수익자가 C1클래스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목표금액(목표수익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유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평가금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좌수÷1,000)이 목표금액 이상인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영업일에 환매를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정액적립식인 경우 보유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목표금액에서 최종납입액을 차감한 금액 이상인 때에도 해당 영업일에 환매를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약관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3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②약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③판매회사(약관 제21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를 말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①모든 클래스 (C1, C2, C3, C4, A1) 수익증권은 환매수수료를 징구하며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약관제21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를 말합니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합니다.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③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④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관 제2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된 C2 클래스 수익증권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C1 클래스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①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는 약관 제21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①약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투자증권 등 자산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1.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2. 환매연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재개시 환매금의 지급방법 3.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리방법 ③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④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⑤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금의 지급방법 ⑥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을 지급합니다. 1.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수익자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2.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자산운용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제1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그 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약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③자산운용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④자산운용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약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수익증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⑤자산운용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수익자, 수탁회사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 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Ⅳ. 매입・환매・전환・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2. 환매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이익 등의 분배방침

이익초과분배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른 성과(이하 “분배금”이라 합니다)를 약관 제 43 조제 1 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배합니다. 이 경우 분배금은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하여 현금

	또는 수표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방법	1. C1 클래스 수익증권, C3 클래스 수익증권, C4 클래스 수익증권 및 A1 클래스 수익증권은 수익자의 노후생활·교육·결혼 등 장래의 자금수요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재산증식을 도모하고자 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C2 클래스 수익증권은 적립식투자자의 적립된 목돈에 대한 새로운 투자방식 제공, 이자생활자의 정기적인 연금지급효과 제공, 임의식 투자자의 적립식 투자방식 병행 등을 통하여 수익자의 다양한 니즈(Needs)을 충족시키고 투자편익 증대를 도모하고자 다음 각목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가. 분배금 기준일 및 주기 : 매 1 개월. 설정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기준일은 2007 년 6 월 15 일 나. 분배금 지급일 : 분배금 기준일의 익영업일 다. 분배금 : 수익자별 당해 종류 수익증권 납입금액(약관 제 24 조의 경우에는 납입금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약관 제 44 조제 2 항의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재투자를 위한 납입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분배금의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이하 "투자원금"이라 한다)의 0.50%. 다만, 마목 단서 규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 분배금 지급에 따른 수익증권좌수 차감 : 분배금의 지급은 '세후평가금액좌수분할식'에 의하여 지급합니다. '세후평가금액좌수분할식'이란 매월 분배금지급일 현재(이하 본 항에서 "매월"이라 한다) 당해 수익자의 분배직전 수익증권잔고좌수에 [매월 당해 수익자의 분배금÷매월 당해 수익자의 분배직전 세후수익증권평가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수익증권좌수(좌미만 절상)를 평가금액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분배금 지급에 따른 수익자의 수익증권좌수 차감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배금 지급에 따른 수익자의 수익증권좌수 차감분 = 매월 당해 수익자의 분배직전 수익증권잔고좌수×[매월 당해 수익자의 분배금÷매월 당해 수익자의 분배직전 세후수익증권평가금액] 마. 분배금 지급방식 : 약관 제 21 조 제 2 항의 본문 및 약관 제 22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라목의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가 매월 당해 분배직전 수익증권잔고좌수에 [매월 당해 수익자의 분배금÷매월 당해 수익자의 분배직전 세후수익증권평가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수익증권좌수(좌미만 절상)를 환매 청구**한 것으로 보아 매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분배금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매월 당해 수익자의 분배금이 매월 당해 수익자의 분배직전 세후수익증권평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매월 당해 수익자의 분배금÷매월 당해 수익자의 분배직전 세후수익증권평가금액]"을 "1"로 봅니다. ※ 상기 수익증권좌수 환매청구는 약관 제 25 조(수익증권의 환매제한) 및 제 27 조(수익증권의 부분환매)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예시) 2007.1.16. 납입금액 1 억원을 기준가격 1,000 원에 C2 클래스 수익증권을 매입한 경우 → 1 억좌 매입 분배금 기준일 : 매 1 개월 (최초분배금 기준일이 2007.2.15 이면 매월 15 일이 기준일이 됨) 최초 분배금 지급일 : 2007.2.16 → 매월 분배금 지급일 : 매월 16 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 최초 분배금 지급일 기준가격/과표기준가격 : 2,000 원 최초 분배금 분배직전 평가금액 : 1 억좌×2,000 원÷1,000 원=2 억원 분배직전 수익증권의 세금 : 1 억좌×1,000 원×15.4%÷1,000 원 =1,540 만원 최초 분배금 지급에 따른 차감좌수 : 1 억좌×[50 만원(1 억원×0.5%)÷(2 억원−1,540 만원)] =270,855.9 좌 → 270,856 좌 **세전 분배금 = 270,856 좌×2,000 원÷1,000 원=541,712 원** **분배금에 대한 세금 = 270,856 좌×1,000 원×15.4%÷1,000 원=41,711.8 원 → 41,710 원 (10 원미만 버림)** **세후 분배금 = 500,002 원** 최초 분배금 분배직후 잔고좌수 : 1 억좌−270,856 좌=99,729,144 좌 최초 분배금 분배직후 평가금액 : 99,729,144 좌×2,000 원÷1,000=199,458,288 원
분배금 지급형태	판매회사(약관 제 21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를 말한다)는 약관 제 43 조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분배금(분배금 지급에 따른 수익증권좌수 차감분에 상당하는 환매대금을 말합니다)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

	는 수표로 지급합니다. **※ 분배금에 대하여 환매수수료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분배금 지급중단	매월 당해 수익자의 분배금이 매월 당해 수익자의 분배직전 세후수익증권평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배금이 최종 분배금이 되며, 다음 분배금부터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분배금의 지급연기 등	①제 43 조의 규정에 의하여 C2 클래스 수익증권의 분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자산운용회사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분배금 지급일에 분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 없이 미지급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증권 등 자산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분배금 지급을 위한 재원마련이 곤란한 경우 2.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어 분배금 지급을 위한 재원마련이 곤란한 경우 3. 천재·지변 및 유가증권시장 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어 분배금 지급을 위한 재원마련이 곤란한 경우 ②분배금의 지급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분배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분배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1. 분배금 지급재개시기는 지급연기 사유가 해소된 시점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배금 지급일로 합니다. 2. 분배금 지급금액은 약관 제 43 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미지급 분배금 총액에 당월 분배금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	①판매회사는 수익자가 약관 제 43 조 및 약관 제 43-1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분배금 지급에 따른 수익증권좌수 차감분에 상당하는 환매대금을 말한다)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지급일에 분배금지급일의 C1 클래스 수익증권 기준가격으로 C1 클래스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약관 제 43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하며, 수익자는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종류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자산운용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약관 제 14 조제 1 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상환금등의 지급	①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 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자산운용회사가 약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등	①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약관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합니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②수탁회사가 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전환・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4. 분배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Ⅰ.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 펀드의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펀드 자산을 주로 채권 및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합니다. 다만, 주식에의 투자는 무위험차익거래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벤치마크 : 매경BP국공채1년지수

1) 이자소득 추구전략

□ 채권 투자전략

▫ 국채, 지방채,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 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과 신용등급 A2(-) 이상의 어음에 주로 투자합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95% 이내(평균적으로 85%수준)에서 채권을 투자하며, 듀레이션을 1년 이내로 유지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 투자채권의 일정부분을 주식및채권관련파생상품투자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대용증권으로 활용합니다.

□ 유동성자산 투자전략

▫ 매월 분배금 지급에 따른 유동성 관리차원에서 콜론 및 기타 현금성자산에 투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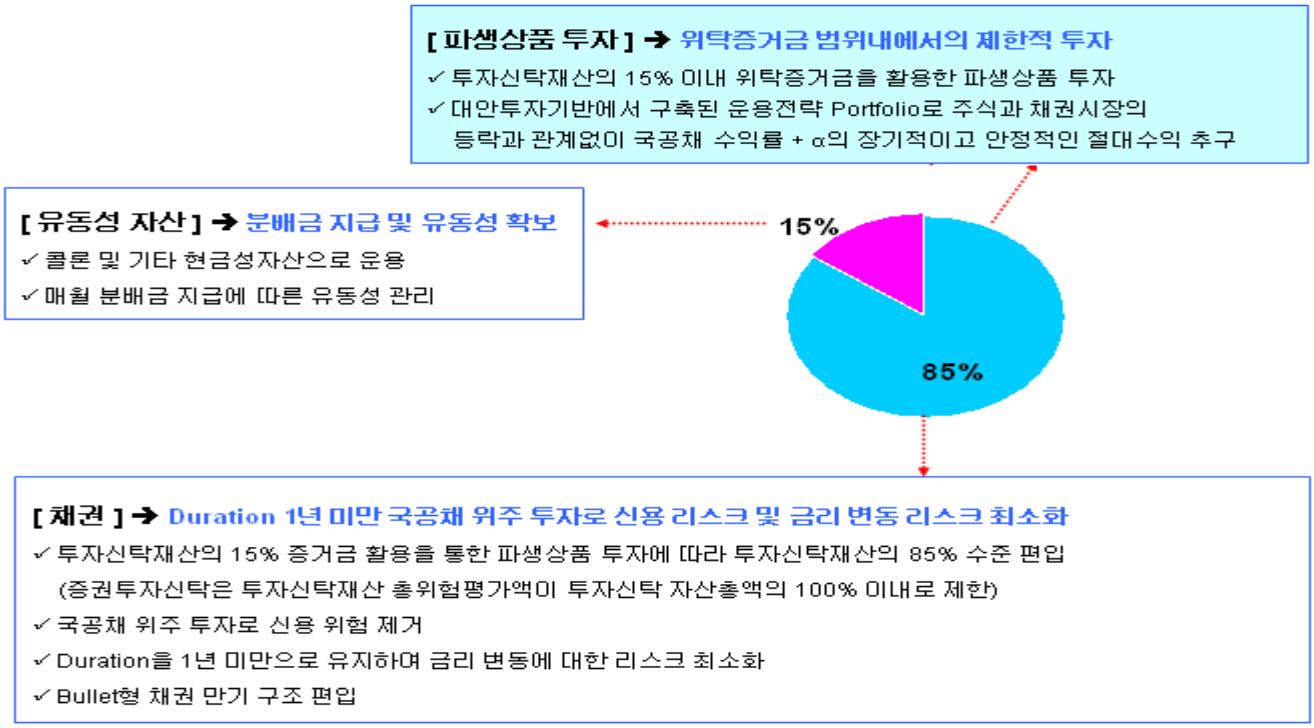

2) 자본이득 추구전략

□ 파생상품 투자전략

▫ 위탁증거금 범위내에서의 제한적 투자

▫ 투자신탁재산의 15% 이내의 위탁증거금을 활용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합니다.

▫ 핵심투자전략 1: 시분할을 통한 안정적 수익 확보

1개월 이하의 듀레이션을 가진 운용전략을 적용하여 절대적 주가변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환경하에서 운용

▫ 핵심투자전략 2: 전략적 분산을 통한 추가 수익 확보

1개월간 주가 10% 이하의 등락 확률 70% →

10% 이내의 주가변동시 수익확보전략 & 추세하락시 수익확보전략 + 추세상승시 수익확보전략

□ 주식투자전략

▫ 주식과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간의 무위험 수익 추구를 위한 차익거래 위주로 투자합니다.

▫ 이 경우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재산의 10% 이내에서 무위험 차익거래 위주로 운용합니다.

※ 유의사항

(1) 당해 펀드의 운용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당해 펀드가 추구하는 목표 및 스타일은 단기적인 투자자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자에게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2. 투자위험

구 분	주 요 내 용
투자위험 요약	당해 투자신탁은 주로 채권에 투자합니다. 만약, 투자된 채권을 발행하는 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에 따라 급격히 채권가격이 변동되거나, 어음 등의 투자에서 발행사의 파산 등의 원인이 생길 경우 손실위험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관련법령은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여 이와 같이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수익증권이 판매되는 경우에도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채권 및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수익자는 이자율, 개별종목채권가격 및 주식시장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수익자의 투자자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투자된 종목의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변동위험·이중가격 위험	시장의 여러 변동요인에 따라 환매청구시의 기준가격과 환매일의 기준가격이 동일하지 않아 환매청구일의 평가금액은 환매일의 출금액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채권혼합형투자신탁의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금액이 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분배에 따른 세금관련위험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채권혼합형펀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금의 이연효과가 없어 복리운용의 효과면에서 다소 불리합니다.
환매연기 위험 또는 환매제한위험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유가증권시장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증권 등 자산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환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에 따른 원본감소 위험	분배금 지급시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에 따라 투자원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익금이 분배금보다 적을 경우 분배금 지급재원이 투자원금에서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분배금 지급중단위험	매월 분배금 지급에 따라 수익증권보유좌수 및 평가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며, 매월 당해 수익자의 분배금이 매월 당해 수익자의 분배직전 세후수익증권평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배금이 최종 분배금이 되며, 다음 분배금부터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투자대상

①자산운용회사는 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운용합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신탁 자산대비)	투 자 대 상 세 부 설 명
주식/채권/어음	**40%이상**	
1. 주식	10%이하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2. 채권	95%이하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3. 어음	95%이하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4.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5. 금리스왑거래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수익증권등	5%이하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10%이하)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6-1. 주식과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주식과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주식인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는 약관 제37조제1항제1호의 주식투자한도(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7. 투자증권의 대여		투자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합니다.

8. 투자증권의 차입	20%이하	약관 제3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
9.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 합계액) 15% 이하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 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10. 환매조건부채권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100분의 50이하로 합니다.
11.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합니다.
12. 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합니다.
13. 기타 사항	▫ 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 약관 제3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4. 투자제한

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77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어음(법제2조제7호의 투자증권에 해당하는 어음에 한함), 법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채무증서 및 어음, 동조항의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함), 채무증서 및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것에 한함)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 주식의 종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종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합니다.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5.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1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다만, 매1월이 되는 날 전에 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6.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7.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8.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②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약관 제37조 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 약관 제38조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③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1월간은 약관 제37조제1항제8호, 약관 제38조 제1항제2호본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Ⅱ. 자산의 평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1. 자산의 평가

□ 간접투자재산별 평가방법

①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합니다.

1.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이하 “상장주식”이라 한다)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주식(이하 “등록주식”이라 한다)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2. 비상장·비등록주식 :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3. 장내파생상품 :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등(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이 발표하는 가격
4.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한다)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5. 비상장채권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한다)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6.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7. 부동산 : 취득가격. 다만, 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
8. 장외파생상품 및 실물자산 : 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9. 간접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간접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10. 외국간접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은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11.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12. 비상장 외화표시유가증권 :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②법시행령제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전환주식 등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법시행규칙제33조제1항 및 법시행령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③자산운용회사가 외화로 표시된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은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로 합니다. 이 경우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고시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율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 기준가격 산정방법

①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

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합니다.

②제1항의 기준가격 계산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③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합니다.

④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산정주기, 공시방법 및 공시장소

① 산정주기: 매일

② 공시주기: 매일

③ 공시방법: 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

- 칸서스자산운용㈜ 홈페이지(http://www.consus.co.kr)
-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http://www.amak.or.kr)

Ⅲ. 투자증권·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table>
<tr><th>구 분</th><th>중개회사의 선정기준</th></tr>
<tr><td>투자증권 거래</td><td>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
<table>
<tr><th>평가항목</th><th>세미나</th><th>탐방</th><th>정보 및 리서치</th><th>자료</th><th>주문 체결 능력</th><th>수수료</th><th>문제 해결 및 기타</th><th>합계</th></tr>
<tr><td>항목가중치</td><td>20%</td><td>10%</td><td>30%</td><td>10%</td><td>15%</td><td>5%</td><td>10%</td><td>100%</td></tr>
</table>
* 각 평가항목은 각각 1~5 점으로 평가
* 각 항목별 점수를 항목가중치로 가중 평균하여 합산
* 각 등급구분은 상위 합산점수 기준으로 A~C 등급은 각각 4 개사로 하며, 나머지는 D 등급
* 각 등급별 중개회사의 비율은 A(36%이상), B(28%), C(12%), D(24%이하)를 원칙으로 함</td></tr>
<tr><td>장내파생상품 거래</td><td>채권 및 채권관련파생상품
<table>
<tr><th>평가항목</th><th>세미나</th><th>보고서</th><th>거래 체결 능력</th><th>거래 용이성</th><th>시장판단 대처능력</th><th>기타 서비스</th><th>합계</th></tr>
<tr><td>배점</td><td>20</td><td>15</td><td>20</td><td>15</td><td>15</td><td>15</td><td>100</td></tr>
</table>
* 각 평가항목은 0 ~ 평가항목별 배점으로 평가
*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
* 합산점수 기준으로 상위 10 개사를 채권 거래시 중개회사로 선정
* 합산점수 기준으로 상위 2 개사를 채권관련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로 선정</td></tr>
</table>

*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중 일부 자산은 상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선정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Ⅳ. 매입·환매·전환·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매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7 시[오후 5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2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2)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이 경우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되는 때에는 약관 제 19 조 제 3 항을 준용합니다.

□ 수익증권의 판매기준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합니다.

1. C1 클래스 수익증권 : 적립식 투자자
2. C2 클래스 수익증권 : 임의식·거치식 투자자
3. C3 클래스 수익증권 : 최초 납입금액 100만원이상의 임의식·거치식 투자자
4. C4 클래스 수익증권 : 자산운용회사를 판매회사로 하는 투자자
5. A1 클래스 수익증권 : 임의식·거치식 투자자

㈜ 적립식 투자자가 일부 환매시 판매회사가 이를 임의식 투자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C1 클래스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의 판매가격

▫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약관 제19조제3항을 준용합니다)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약관 제3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수익증권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2. 환매관련 유의사항

□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①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제 1 항의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는 약관 제 21 조 내지 제 23 조, 제 25 조 내지 제 27 조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①약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투자증권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1.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2. 환매연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재개시 환매금의 지급방법
3.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리방법

③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④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⑤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금의 지급방법

⑥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을 지급합니다.

1.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수익자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2.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자산운용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제1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그 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3. 전환관련 유의사항

- C1 클래스 수익자는 약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정한 저축기간의 종료 이후에 C1 수익증권에 대하여 C2 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의 전환에 있어 C1 클래스 수익증권의 수익자는 C1 클래스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그 환매자금(환매대금에서 관련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매대금지급일의 C2클래스 수익증권 기준가격으로 C2 클래스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C2 클래스, C3 클래스, C4 클래스 및 A1 클래스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수익증권 전환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4. 분배관련 유의사항

□ 상환금등의 지급

①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 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자산운용회사가 약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등

①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약관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②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

다.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Ⅰ.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 자산운용회사 : 칸서스자산운용주식회사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굿모닝신한타워 9층, TEL : 02-2077-5000
- 자 본 금 : 100억원
- 주 요 주 주 : 군인공제회(40%), 한일시멘트(29%), 하나증권(15%)
- 회 사 연 혁 : 2004. 5. 10 칸서스자산운용주식회사 설립
  2004. 6. 25 금융위원회 자산운용업 예비허가
  2004. 9. 10 금융위원회 자산운용업 본허가
  2004.10.13 칸서스 하베스트 적립식 주식형펀드 출시
  2005.12.30 금융감독원 선정, 2005년 우수금융신상품 최우수상 수상
  2006. 1.30 한경Business 선정, 2005년 주식형 Best 운용회사
  2007. 1.31 2007 대한민국 펀드대상 : 운용사 부문 (주식운용)
  2007. 9.20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국내 Active주식형부문)

2. 주요 업무

□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법 제4조)

①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②투자신탁재산의 투자 및 운용지시

③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자산운용회사의 선관의무(법 제86조)

①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②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한 제비용 및 보수를 신탁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투자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③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자신의 채무를 수익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④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채권은 그 자산운용회사의 당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자산운용회사의 책임(법 제19조)

①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자산운용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법 제179조)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간접투자재산의 기준가격 산정업무

자산운용회사는 법 제96조 제1항에 의한 기준가격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인 "㈜ HSBC 펀드서비스"에 위탁하고 있으며, 당해 수수료는 당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합니다.

□ 기타 업무의 위탁

당해 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간접투자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164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사실과 위탁의 책임이 위탁한 자에게 있습니다.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목	제4(당)기	제3(전)기	항목	제4(당)기	제3(전)기
유동자산	10,241	10,141	영업수익	15,847	12,577
고정자산	7,120	5,657	영업비용	11,347	8,820
자산총계	**17,361**	**15,798**	**영업이익**	**4,499**	**3,756**
유동부채	3,334	2,733	영업외수익	35	34
고정부채	303	201	영업외비용	11	13
부채총계	**3,637**	**2,935**	경상이익	4,524	3,777
자본금	10,000	10,000	특별손익	-	-
이익잉여금	3,522	2,811	세전순이익	4,524	3,777
자본조정	201	51	법인세비용	1,313	1,066
자본총계	**13,723**	**12,862**	**당기순이익**	**3,211**	**2,710**

4. 운용자산규모

(2008년 12월 22일 기준, 자산운용협회 공시자료) (단위 : 억원)

구 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PEF	실물자산	총 계
수탁고	14,678	2,027	2,580	-	293	5,527	2,762	814	-	28,682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 명	출생년도	주요 경력
유승우	1962	고려대 경제학과 / 대신투신 주식운용팀장 / 칸서스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펀드매니져입니다.

※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 또는 자산운용협회에서 추가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사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을 교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판매회사의 영업점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Ⅱ. 판매회사

1. 판매회사의 개요

□ 동부증권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5

▫ 홈페이지 주소 및 연락처 : (http://www.winnet.co.kr), TEL: 02-369-3000

▫ 회사연혁 : 1982.12.20 동부증권 설립

□ HMC투자증권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5

▫ 홈페이지 주소 및 연락처 (http://www.shs.co.kr) TEL: 02-3787-2114

▫ 회사연혁 : 1955. 7. 26 신흥증권 설립

1990. 6. 9 기업공개 및 주식상장

2008. 4. 1 HMC투자증권 출범

□ 한양증권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1

▫ 홈페이지 주소 및 연락처(http://www.shs.co.kr) TEL: 02-3770-5000

▫ 회사연혁 : 1956. 3. 27 한양증권 설립

1988. 2.14 기업공개, 유상증자

2006. 1. 25 2005년 증권사 주간추천종목 수익률대회 종합1위

□ 칸서스자산운용주식회사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굿모닝신한타워 9층, TEL : 02-2077-5000

▫ 자　본　금 : 100억원

▫ 주 요 주 주 : 군인공제회(40%), 한일시멘트(29%), 하나증권(15%)

▫ 회 사 연 혁 : 2004. 5. 10 칸서스자산운용주식회사 설립

2004. 6. 25 금융위원회 자산운용업 예비허가

2004. 9. 10 금융위원회 자산운용업 본허가

2004.10.13 칸서스 하베스트 적립식 주식형펀드 출시

2005.12.30 금융감독원 선정, 2005년 우수금융신상품 최우수상 수상

2006. 1.30 한경Business 선정, 2005년 주식형 Best 운용회사

2007.1..31 2007 대한민국 펀드대상 : 운용사 부문 (주식운용)

2007. 9.20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국내 Active주식형부문)

2. 판매업무에 관한 사항

□ 판매회사의 업무(법 제26조)

①간접투자증권의 판매

②간접투자증권의 환매

③분배금 및 상환금의 지급

④세금의 원천징수 및 납부

⑤간접투자증권에 대한 제신고 접수 및 처리

⑥기타 위의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 투자설명서 제공(법 제56조)

▫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동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판매회사에 제공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표준신탁약관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판매행위준칙등(법 제57조)

①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판매행위준칙(이하 이 조에서 "판매행위준칙"이라 함)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1.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2. 투자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함)
3.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4.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이 정하는 행위

②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④자산운용회사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간접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⑤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⑥자산운용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과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장소

판매회사가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의 본·지점을 통하여서만 할 수 있습니다.

□ 판매회사의 책임(법 제61조)

①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판매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매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법 제179조)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Ⅲ. 수탁회사

1. 수탁회사의 개요

- 수탁회사 : 국민은행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 홈페이지 주소 및 연락처 : (http://www.kbstar.com), TEL: 1588-9999
- 회사연혁 : 2001.11.1. 국민·주택 합병은행, 국민은행으로 새출발
  2005.2.21. 대한민국 펀드대상 수상 (한국경제, 자산운용협회, 한국펀드평가)

2. 수탁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수탁회사의 주요업무

①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②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③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④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⑤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⑥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⑦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⑧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⑨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운용행위감시(법제131조)

①투자신탁의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②투자신탁의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가 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판매회사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수 있습니다.

□ 수탁회사의 확인사항(법 제132조)

①수탁회사는 간접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3.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4.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이행내역
5.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②수탁회사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탁회사의 책임(법 제133조)

①수탁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수탁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탁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법 제179조)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Ⅳ. 일반사무관리회사

1. 일반사무관리회사의 개요

▫ 일반사무관리회사 : ㈜ HSBC 펀드서비스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교보증권빌딩 6층

▫ 홈페이지 주소 및 연락처 : (http://www.kr.hsbc.com), TEL:02-3771-9800

▫ 회사 연혁 : 2000.3.23　설립

2001.11　기획예산처 연기금풀 사무관리사 선정

2003.12　국민연금의 사무관리사 선정

2. 주요 업무내용

▫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한다.

▫ 법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받은 업무

Ⅴ. 채권평가회사

1. 채권평가회사의 개요

□ 채권평가회사 : 한국채권평가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 홈페이지 주소 및 연락처 : (http://www.koreabp.com), TEL:02-399-3350

□ 채권평가회사 : 나이스채권평가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번지 한섬빌딩6층
▫ 홈페이지 주소 및 연락처 : (http://www.npricing.co.kr), TEL:02-398-3900

□ 채권평가회사 : KIS채권평가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한국화재보험협회4층
▫ 홈페이지 주소 및 연락처 : (http://www.bond.co.kr), TEL:02-3215-1400

2. 주요 업무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준칙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에게 제공합니다.

1.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업무를 수행할 것
2.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할 것
3.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 업무를 위하여 취득한 정보를 다른 업무의 수행에 이용하지 아니할 것

4 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Ⅰ.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1) 수익자총회

□ 수익자명부 및 수익자명부 관리 방법

①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②자산운용회사는 증권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증권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 신탁약관, 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③자산운용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습니다.

④자산운용회사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증권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증권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증권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약관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봅니다.

⑧자산운용회사가 제3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준용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해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 설정하는 경우
2.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 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②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이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절차
①수익자총회는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은 후 1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⑥자산운용회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운영
①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중에서 수익자총회에서 선출합니다.
②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 외에 이 신탁약관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연기
①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일전까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하여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신탁약관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과반수로 의결합니다.
④약관 제28조제3항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봅니다.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①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수탁회사·신탁기간의 변경 기타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것으로서 법령에 정한 사항에 관한 신탁약관의 변경 또는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수익자총회 전에 당해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의 의결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약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③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 준용규정
수익자 총회와 관련하여 이 신탁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74조에 따릅니다.

2) 의결권

□ 의결권

①수익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③의결권은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증권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참고자료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잔여재산분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①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간접투자자에 관련된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간접투자재산명세서
2.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 자산운용회사 등의 손해배상책임

①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탁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회계감사인은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의 결과 중요한 사항을 회계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간접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반이 회계감사인인 경우에는 당해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①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

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①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이 상품의 투자신탁설명서 및 기준가변동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칸서스자산운용㈜ 홈페이지(http://www.consus.co.kr),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http://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 영업보고서

①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이 기재된 서류

□ 결산서류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 감사보고서

①회계감사인은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기준가격계산서
4.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②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금융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와 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 수탁회사에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

①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기준일) 현재의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
   가. 투자신탁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월이 종료되는 날
   나. 투자신탁회계기간의 말일
   다.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일
   라.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최초설정일 또는 성립일)부터 당해 기준일까지의 기간(당해 운용기간)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당해 운용기간중의 손익상황
3. 기준일 현재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간접투자재산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당해 운용기간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5. 기준일 현재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증권 등 자산의 내역
6. 간접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7. 법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8. 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9. 그 밖에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수탁회사보고서

①수탁회사는 간접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수탁회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유한 수익증권의 평가액이 10만원 이하인 수익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수탁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보고서를 간접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6.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 약관변경사항에 대한 공시

①자산운용회사가 이 신탁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자산운용협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신탁약관의 내용이 표준신탁약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후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 지체없이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②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2.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약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회이상 공고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④이 신탁약관에 규정된 사항중 법령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 의결권행사

자산운용회사는 법 제93조에 의거하여 신탁재산의 수익자보호를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

①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1.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행사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때에는 간접투자자가 당해 의결권행사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호의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의 내부지침
2.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간접투자기구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
3.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와 의결권행사 대상법인의 관계가 특수관계인 또는 공동출자자이거나 자산운용회사의 관계판매회사 및 그 계열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의 주요출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장내·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 위험에 관한 지표의 개요 및 위험에 관한 지표가 공시된다는 사실 : 해당사항 없음

□ 경영에 관한 보고 및 공시

①자산운용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영업년도의 결산보고서 및 매 분기의 정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서 및 정기보고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는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 영업년도의 결산일부터 4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매 분기말(결산일을 포함하는 분기를 제외한다)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건전성·수익성 및 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5. 대표자, 설립일 등이 포함된 회사의 개요
6. 납입자본금,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한 주요 주주에 관한 사항
8. 배당률, 주당 당기순이익, 배당성향 등 배당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합병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①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 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 및 판매회사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1.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최종의 결산서류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합병계획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 대하여는 법 제10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신탁약관의 열람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약관을 간접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운용실적 공시

자산운용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간접투자재산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내역이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 판 매 일 : _____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_____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투자자 확인 사항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_____(그 주요 내용을)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